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4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소병훈·박홍배·안태준

안호영 • 이병진 • 정성호

박용갑・박 정・권칠승

송재봉 • 윤준병 • 서삼석

김윤덕 · 노종면 · 서미화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,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%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.

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,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,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 리한 측면이 있음.

참고로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,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

려는 것임(안 제11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제1항 중 "연금보험료, 환수금, 그 밖의"를 "연금보험료 및 그밖에"로, "징수하거나 환수할"을 "징수할"로, "등의 권리는"을 "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)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할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5조(시효) ① 연금보험료, 환	제115조(시효) ① 연금보험료 및
<u>수금, 그 밖의</u> 이 법에 따른 징	그 밖에
수금을 <u>징수하거나 환수할</u> 권	<u>징수할</u>
리는 3년간, 급여(제77조제1항	
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	
외한다)를 받거나 과오납금을	
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	
자 <u>등의 권리는</u> 5년간, 제77조	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
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	<u>할 권리는</u>
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	
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	
효가 완성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